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제설치조례폐지조례안】

영 주 시

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8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 .

제 출 자 : 영주시장

1. 폐지이유

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·세출 수요가 소액이어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

3. 폐지조례안 : 덧붙임

4. 참고자료

가.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감사원 의견서

나. 최근 4년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운용현황

- 2 -

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보유중인 예금의 처리) 이 특별회계에 보유중인 예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한다.

▣ 참고자료

가.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감사원 의견서

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특정사업의 세출수요가 없거나 극히 소액인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정보왜곡 및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그런데도 경상북도 관하 경주시 등 20개 시·군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같이 영덕군에서 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”를 설치하여 매년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전혀 없는 등 19개 시·군에서 31개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고 있으나 세출이 연평균 세입결산액 870억 원의 9.6%에 해당하는 83억원에 불과하여 예산만 사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또한 상주시에 “청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”를 설치하여 매년 1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15개 시·군에서 연1억원이하 규모의 18개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연평균 세입결산액이 66백만여원, 집행액이 22백만여원에 불과하여 행정력만 낭비하는 등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나. 최근 4년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운용현황

(단위:천원)

연도	예산액	집행액	집행율	집행내역
계	377,000	22,639	6%	
2000	106,000	22,639	21%	· 도로보수비 : 22,639
2001	89,000	0		
2002	91,000	0		
2003	91,000	0		